

우수업체

[]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 우수 종축업체

인증신청서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사업장	상호명			
	소재지			
취급 품목(종축)				

「축산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우수업체의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장 귀하

제출서류	1. 정액등처리업 허가증 사본 1부 또는 종축업 허가증 사본 1부. 2. 가축개량기관 또는 종축검정기관이 가축의 외모 및 능력을 심사하고 발급한 서류 1부 3. 가축개량기관 또는 종축검정기관이 젖소의 유전능력을 평가하고 발급한 서류 1부(젖소만 해당합니다) 4. 가축개량기관 또는 종축검정기관이 돼지의 스트레스증후군 유전자를 검사하고 발급한 서류 1부(돼지만 해당합니다) 5. 해당 정액등처리업체 또는 종축업체가 「축산법 시행규칙」 별표 3 제2호, 별표 3의2 제1호 나목 또는 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관할 시·도가축방역기관이 발행한 서류로 한정합니다)	수수료 없음
------	--	-----------

유의사항
취급 품목(종축)란에는 정액등처리업체의 경우에는 가축의 종류와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 중 취급하는 품목을 모두 적고, 종축업체의 경우에는 취급하는 종축의 종류를 적습니다.

